3. 情報産業 關聯法規

구 분	법 령	공포 및 개정 연월일	목 적
행정조직 관련	○행정업무전산화추진 규정	1982. 1.28 대통령령 제10709호	행정기관의 행정업무전산화를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자계산조직의 설치, 운영 및 업무개발등 전산화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과 정부투자기관 등의 전산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 시행규칙	1983. 7.12 대통령령 제11169호	
		1982. 7. 3 총리령 제261호	
정보통신 관 련	○공중전기통신사업법	1983.12.30 법률 제3686호	공중전기통신사업의 운영과 공중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인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전기통신사업의 발전을 기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 〃 시행령	1984. 9. 1 대통령령 제11495호	
		1986. 3.17 대통령령 제11872호	
	○ 〃 시행규칙	1984. 9. 1 체신부령 제758호	
	○전기통신기본법	1991. 8.10 법률 제4393호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통신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 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 〃 시행령	1984. 9. 1 대통령령 제11494호	
		1987. 7. 1 대통령령 제12196호 (유선통신관리법시행령)	
	○ 〃 시행규칙	1984. 9. 1 체신부령 제757호	
	○전기통신공사업법	1976. 4. 6 법률 제2893호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업에 대하여 적정한 규제를 함으로써 전기통신설비의 완전한 시공을 확보하고 전기통신설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
		1987.11.28 법률 제3950호	
	○ 〃 시행령	1976. 9.10 대통령령 제9457호	
		1986. 4. 3 대통령령 제11877호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1986. 5.12 법률 제3848호	전산망의 개발보급과 이용등을 촉진하여 정보화사회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

구 분	법 령	공포 및 개정 연월일	목 적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86 12.31 대통령령 제12049호	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전자계산조직의 도입 및 이용에 관한 규정 ○ 〃 시행세칙	1982 5 24 대통령령 제10828호 1982. 6. 1 과학기술처 고시제2호	과학기술진흥법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전자계산조직의 도입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이용기술의 개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전파관리법	1961.12.30 법률 제924호 1989 12.30 법률 제4193호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 전파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무선통신의 발전을 기하고 전파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통신개발연구원법 ○ 〃 시행령	1987. 11 28 법률 제395호	통신개발연구원을 설립하여 국내외의 통신 및 통신관련 분야의 정책, 조사, 산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를 수집, 조사, 연구하고 이를 보급 활용하게 함으로써 정보화사회의 구현을 위한 국가의 통신정책 수립과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
	○한국전기통신공사법 ○ 〃 시행령	1981. 3.14 법률 제3385호 1989 12.27 법률 제4150호 1981.10.17 대통령령 제11937호 1986.12. 6 대통령령 제12005호	한국전기통신공사를 설립하여 공중전기통신사업의 합리적 경영과 전기통신기술의 진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
	○전산망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1989. 4 25 체신부령 제812호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망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망기술기준을 정함
프로그램 관 련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1987.12. 4 법률 제3984호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경제·사회 및 공공부문에

구 분	법 령	공포 및 개정 연월일	목 적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시행령	1988.10.20 대통령령 제12538호	널리 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 시행령 ○ 〃 시행규칙	1986.12. 31 법률 제3920호 1987. 7.24 대통령령 제12218호 1987. 8.25 총리령 제328호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프로그램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프로그램관련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저작권법 ○ 〃 시행령 ○ 〃 시행규칙	1957. 1.28 법률 제432호 1986.12.31 법률 제3916호 1959. 4.22 대통령령 제1482호 1987. 7. 1 대통령령 제12194호 1987. 7. 1 문화공보부령 제194호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자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
정보산업 기술관련	○공업발전법 ○ 〃 시행령 ○ 〃 시행규칙	1986 1. 8 법률 제3806호 1989. 3.25 법률 제4092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1986. 6.28 대통령령 제11937호 1986. 7. 1 상공부령 제709호	공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공업의 합리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과학기술진흥법 ○ 〃 시행령	1967. 1.16 법률 제1864호 1977.12.16 법률 제3011호 (정부조직법) 1969.10.21 대통령령 제4166호 1973. 5.16 대통령령 제6676호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종합적 기본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을 위한 체제의 확립과 재정조치의 강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안정, 향상에 기여
	○국제기술협력규정	1985. 2.21 대통령령 제11634호 1987. 4.10 대통령령 제12139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과학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협력의무와 재외과학기술자의 국내유치에 관하여

구 분	법 령	공포 및 개정 연월일	목 적
		관한 규정)	필요한 사항을 정함
	○기술개발촉진법	1972.12.28 법률 제2399호 1989. 3.25 법률 제4092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기술의 자주적 개발과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을 촉진하여 그 성과를 보급하고 국내기술의 수출을 진흥함으로써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
	○ 〃 시행령	1978. 4.12 대통령령 제8941호 1987.12.31 대통령령 제12333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 〃 시행규칙	1978. 4.28 총리령 제205호 1987. 2.14 총리령 제322호	
	○기술용역육성법	1973. 2. 5 법률 제2474호 1983.12.31 법률 제3691호 (외자도입법)	국내기술용역업체의 건전한 육성과 국내기술수준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
	○ 〃 시행령	1977. 7.16 대통령령 제8632호 1987.12.31 대통령령 제12342호	
	○ 〃 시행규칙	1977. 8.17 총리령 제193호 1982.10 18 총리령 제265호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1986. 5.12 법률 제3851호	산업기술의 연구개발과 선진기술의 도입·보급 등을 합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설립과 그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지원함으로써 산업기술의 향상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 〃 시행령	1987. 3.19 대통령령 제12094호	
	○ 〃 시행규칙	1987. 4. 9 총리령 제324호	
	○특정연구기관육성법	1973.12.31 법률 제2671호	과학기술과 산업경제의 발전을

구 분	법 령	공포 및 개정 연월일	목 적
	○ 〃 시행령	1981. 3 30 법률 제3404호 1974. 6 13 대통령령 제7178호 1989. 7.14 대통령령 제12748호	위하여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기 타	○기술용역대가기준	1975. 4.30 공고 1988. 8. 6 개정	기술용역육성법 제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자가 국내에서 수주하는 기술용역에 대한 기술용역대가의 기준을 정함
	○소프트웨어개발비 산정기준	1989. 4 24 과기처고시 제89-3호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자가 국내에서 수주하는 소프트웨어개발용역에 대하여 적정한 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1986. 3.28 체신부령 제776호 1986. 9.30 체신부령 제781호	전기통신기본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함
	○전산망조정위원회 운영규칙	1987. 5.27 위원회규칙 제1호 1989. 7. 4 개정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망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추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전자파장해검정규칙	1990. 9. 3 체신부령 제825호	전자파관리법 제29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 장해기기의 전자파장해방지기준 및 전자파장해로부터의 보호기준과 법 제29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장해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구 분	법 령	공포 및 개정 연월일	목 적
기 타	○행정전산망추진에 관한 규칙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행정전산망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과학기술기금운용 규정	1969.10 21 대통령령 제4167호 1978.11.27 대통령령 제9210호	과학기술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금융기관전자계산 조직의 도입에 관한 협의세칙	1985. 2.21 시행	금융기관의 전자계산조직의 도입에 관한 기준 및 협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세계저작권협약 (UCC)	1952. 9. 6 배포 1971. 7.24 개정	각 체약국의 문화·학술·예술적 저작물에 있어서 저작자 및 여타의 모든 저작재산권자의 권리에 대하여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호
	○소프트웨어수입추천		
	○전자 및 전기제품의 국산개발소요부품 수입추천요령	1988. 1. 8 한국전자공업진흥회공고 제81호 1989. 4. 1 〃 제100호 *1989. 9. 1 전자협동조합으로 이관	전자·전기제품의 국산개발에 소요되는 부품의 수입추천요령을 정함으로써 동제품의 국산개발을 촉진
	○중고컴퓨터수입추천	1988. 9.19 한국전자공업진흥회공고 제97호	국산공급이 불가능하고 기계의 성능이 보장된 제품으로서 중고품목 수입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품목

●工業發展法

〔1986. 1 8. 法律 第3686號〕

改正 . 1989 3.25. 法律 第4092호(中小企業의 經營安定 및 構造調整促進에 관한 特別措置法)

第1章 總 則

第 1 條(目的) 이 法은 工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工業의 合理化를 促進함으로써 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適用範圍) 이 法은 이 法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工業 및 이에 必須的으로 관련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業種(이하 "工業"이라 한다)에 適用한다.

第 3 條(工業發展施策의 基本方向) ①工業의 발전은 개인의 創意를 바탕으로 自律과 競爭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政府는 第1條의 規定에 의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1. 工業技術 및 生産性의 향상
2. 資源의 효율적인 開發 및 이용
3. 人力의 養成 및 이용
4. 工業自立基盤의 확충

③工業을 영위하는 事業者(이하 "事業者"라 한다)는 第2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施策이 효율적으로 達成될 수 있도록 적극 協助하여야 한다.

第2章 工業合理化의 促進

第 4 條(合理化業種의 指定申請) 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영위하는 業種을 工業의 合理化를 促進하기 위한 對象業種(이하 "合理化業種"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商工部長官에게 申請할 수 있다.

第 5 條(合理化業種의 지정) ①商工部長官은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申請을 받은 때에는 당해 業種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정한 期間을 정하여 이를 合理化業種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申請한 事業者의 數가 당해 業種을 영위하는 전체 事業者의 相當數에 達하거나 그 申請을 한 事業者의 經營規模 또는 生産規模가 당해 業種의 事業分野에 있어서 大部分을 占하여야 한다.

1.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業種으로서 工業發展과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國際競爭力의 확보가 緊要하다고 인정되고 事業者의 自主的인 노력만으로 그 확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業種
   가. 工業技術의 향상이나 設備의 개선 등을 통하여 生産性을 현저히 增進할 수 있는 경우
   나. 資源 및 에너지의 節約效果 또는 附加價値增大效果가 현저히 클 경우
   다. 生産 및 經營活動에 있어 事業者의 共通的인 隘路事項을 解決할 수 있는 경우
2. 産業構造의 變化등 國內外 經濟與件의 變化로 事業者의 經營規模·生産規模 또는 生産方法의 부적당한 상태가 長期間 계속될 우려가 있는 業種으로서 그 상태를 克服하는 것이 工業發展과 國民經濟의 건전

한 발전에 緊要하다고 인정되는 業種

②商工部長官은 第1項 本文 後段의 요건이 충족될 申請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第1項第1號 또는 第2號의 業種을 영위하는 事業者가 自發的으로 第4條의 申請을 할 것으로 期待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期間을 정하여 당해 業種을 合理化業種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商工部長官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合理化業種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利害當事者(團體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商工部長官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合理化業種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工業發展審議會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⑤商工部長官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合理化業種을 지정할 때에는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第6條(合理化計劃의 수립) ①商工部長官이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合理化業種을 지정한 때에는 第5條第1項第1號 또는 第2號의 구분에 따라 業種別로 工業의 合理化를 促進하기 위한 計劃(이하 "業種別合理化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業種別合理化計劃을 變更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第1項의 業種別合理化計劃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85條第1項第1號에 해당되는 業種
   가. 필요한 技術의 내용 및 開發促進에 관한 사항
   나. 製品의 性能 및 品質水準에 관한 사항
   다. 生產規模의 적정화 또는 生產品目의 전문화에 관한 사항
   라. 共同行爲에 관한 사항
   마. 기타 業種別로 工業의 合理化를 促進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제85條第1項第2號에 해당되는 業種
   가. 施設·設備의 처리에 관한 사항
   나.施設·設備의 新設·增設 또는 改造·改替의 제한 및 금지에 관한 사항
   다. 經營規模·生產規模 또는 生產方法의 적정화에 관한 사항
   라. 合併, 營業의 전부 또는 主要部分의 讓渡·讓受등 事業提携에 관한 사항
   마. 事業의 轉換에 관한 사항
   바. 共同行爲에 관한 사항
   사. 기타 業種別로 工業의 合理化를 促進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商工部長官이 第1項의 業種別合理化計劃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第5條第4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④政府는 第2項第2號의 合理化計劃을 수립·실시함에 있어 발생한 雇傭問題에 대하여 필요한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第7條(業種別合理化計劃의 실시) 合理化業種으로 지정된 業種을 영위하는 事業者 및 이를 영위하고자 하는 者(이하 "合理化事業者"라 한다)는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業種別合理化計劃이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自主的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第8條(勸告·조정등) ①商工部長官은 合理化事業者의 自主的인 노력만으로 당해 業種의 業種別合理化計劃의 효율적인 실시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期間을 정하여 合理化事業者에게 共同行爲등 業種別合理化

計劃의 실시를 促進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勸告 또는 조정을 할 수 있다.

1. 業種別合理化計劃에서 정하는 合理化 目標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一般消費者 및 關聯事業者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우려가 없을 것
3 合理化事業者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아니할 것.

②商工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勸告 또는 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合理化事業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정한 期間내에 그 勸告 또는 조정에 따른 措置를 할 것을 命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令에 따라 措置를 이행한 合理化事業者는 商工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商工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商工部長官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令을 하고자 할 때에는 第5條第4項의 規定에 準用한다.

第 9 條(事業內容의 登錄) ①商工部長官은 業種別合理化計劃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合理化業種 중에서 事業內容 및 施設·設備를 登錄하여야 할 業種을 지정할 수 있다.

②商工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하여야 할 業種을 지정할 때에는 당해 業種의 合理化事業者는 商工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商工部에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사항을 變更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商工部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다.

第 10 條(合理化事業에 대한 지원) ①政府는 業種別合理化計劃을 실시하는 合理化事業者에 대하여 金融·租稅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政府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支援을 하고자 할 때에는 第5條第4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3章 工業技術 및 生產性의 向上

第 11 條(工業技術 및 生產性向上의 奬勵) 商工部長官은 事業者로 하여금 工業技術 및 生產性의 向上을 促進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奬勵하여야 한다.

1. 企業의 附設硏究所의 設置 및 운영
2. 技術開發促進法 第10條의 3의 規定에 의한 產業技術硏究組合의 設立 및 운영
3. 特定硏究機關育成法의 適用을 받은 特定硏究機關 및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生產性本部의 적극적인 活用
4.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工業基盤技術開發事業 및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工業技術開發促進事業에의 적극적인 참여
5. 硏究開發投資의 促進 및 擴大
6. 外國先進技術의 導入
7. 기타 工業技術 및 生產性의 향상을 促進하기 위하여 필요한 事業

第 12 條(工業基盤技術向上計劃의 수립 및 公告)

①商工部長官은 工業發展에 緊要한 技術로서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技術分野의 技術水準을 효율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計劃(이하 "工業基盤技術向上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工業基盤技術向上計劃을 變更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工業의 共通的인 隘路事項으로 되어 있는 技術분야
2. 事業者의 自主的인 노력만으로 技術向上을 期待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技術分野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業基盤技術向上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工業技術의 향상을 위한 技術開發 또는 技術導入에 관한 사항
2. 技術人力의 需給展望 및 養成에 관한 사항
3 工業技術水準의 향상을 위한 敎育 및 技術指導에 관한 사항
4. 施設·設備 및 工程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기타 第1項 各號에 해당되는 技術分野의 技術水準을 효율적으로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商工部長官이 工業基盤技術向上計劃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第5條第4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 13 條(工業基盤技術開發事業) ①商工部長官은 工業基盤技術向上計劃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科學技術處長官과 協議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機關으로 하여금 工業發展에 필요한 技術開發事業(이하 "工業基盤技術開發事業"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改正 1989. 3.25 法 4092>

1. 國·公立硏究機關
2. 特定硏究機關育成法의 適用을 받는 特定硏究機關
3. 企業의 附設硏究所 및 產業技術硏究組合
4. 育成法에 의한 大學 또는 專門大學
5. 中小企業의 經營安定 및 構造調整促進에 관한 特別措置法에 의한 生產技術硏究院 및 硏究所

②商工部長官은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機關이 工業基盤技術開發事業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費用에 충당되는 資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出捐할 수 있다.

③第2項의 出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 14 條(工業技術開發促進事業) ①商工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工業技術의 향상을 促進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事業을 실시한다.

1. 技術水準의 評價
2. 技術 및 硏究에 관한 情報의 流通
3. 試驗硏究施設·設備의 이용알선
4. 事業者와 國內外學界·政府·外國政府·國際機構 및 外國의 技術關係機構와의 共同硏究
5. 開發 및 應用된 新技術의 事業化促進事業
6. 技術向上을 위한 指導事業
7. 기타 事業者의 工業技術의 향상을 促進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事業

②商工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을 실시함에 있어 人力 또는 施設·設備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第13條第1項 各號의 機關에 대하여 필요한 人員의 派遣勤務 또는 施設·設備의 活用을 요청할 수 있다.

第 15 條(新技術事業投資에 대한 施策講究) 政府는 新技術을 開發하거나 應用하여 이를 事業化하는 事業者 및 이에 出資를 주된 事業으로 하는 者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 16 條(韓國生產性本部) ①工業의 生產性向上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韓國生產性本部(이하 "生產性本部"라 한다)를 設立한다.

②生產性本部는 法人으로 한다.

③生產性本部는 그 주된 事業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④生產性本部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內外의 필요한 곳에 支部를 둘 수 있다.

⑤生產性本部는 生產性向上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事業을 실시한다.

1. 經營診斷 및 指導事業
2. 敎育訓鍊事業
3. 調査硏究事業
4. 技法開發 및 普及事業
5. 商工部長官이 生產性向上을 위하여 委託한 事業
6. 기타 生產性本部의 定款이 정하는 事業

⑥生產性本部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目的達成에 필요한 經費를 調達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受益事業을 할 수 있다.

⑦生產性本部가 아닌 者는 韓國生產性本部 또는 이와 유사한 名稱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生產性本部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4章 工業發展基金

第 17 條(基金의 設置) 政府는 工業의 균형있는 발전과 工業의 合理化를 促進하기 위한 필요한 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工業發展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第 18 條(基金의 造成) ①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1. 政府의 出捐金 또는 融資金
2. 事業者 또는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團體등의 出捐金
3. 基金의 운용으로 생기는 受益金
4.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收入金

②政府는 第1項의 造成財源외에 國內에서 資金을 借入하거나 外國에서 借款을 얻어 그 資金을 基金에 貸與할 수 있다.

第 19 條(基金의 운용·管理) ①基金은 商工部長官이 운용·管理한다. 다만, 商工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團體로 하여금 基金을 운용·管理하게 할 수 있다.

②基金의 운용·管理 및 區分計理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 20 條(基金의 사용) 基金은 다음 各號의 事業을 위하여 사용한다.

1.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種別合理化計劃의 실시를 위한 事業
2.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業基盤技術向上計劃의 실시를 위한 사업
3. 第16條제5項第5號의 規定에 의하여 商工部長官이 生產性本部에 委託하여 행하는 사업
4 기타 工業의 균형있는 발전과 工業合理化의 促進을 위하여 필요한 事業

第5章 工業發展審議會 및 事業者團體등

第 21 條(工業發展審議會의 設置) 事業者 및 工業에 관한 專門家의 知識을 최대한 活用하고

그 의견을 들어 工業發展을 위한 合理的인 政策의 수립을 도모하고 이 法에 정한 사항을 審議하며 商工部長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商工部에 工業發展審議會(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第22條(組織 및 운영) 審議會의 組織 및 運營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3條(事業者團體) ①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商工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業種別로 당해 業種의 事業團體(이하 "事業者團體"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②事業者團體는 法人으로 한다.

③事業者團體의 定款記載事項과 운영 및 監督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事業者團體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24條(事業) 事業者團體는 당해 業種의 발전을 위하여 業種別로 다음 各號의 事業을 실시한다.

1. 發展方向에 관한 調査·研究事業
2. 利益增進을 위한 事業
3. 業種別合理化計劃의 추진을 위한 事業
4. 生產性向上등 國際競爭力향상을 위한 事業
5. 商工部長官이 당해 業種의 발전을 위하여 委託한 事業
6. 기타 事業者團體의 定款이 정하는 事業

第6章 補 則

第26條(共同行爲등에 대한 特例) ①第6條第1項의 業種別合理化計劃에 의하여 실시하는 合併, 營業의 전부 또는 主要部分의 讓渡·讓受등의 事業提携 및 共同行爲에 대하여는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②商工部長官은 合併, 營業의 전부 또는 主要部分의 讓渡·讓受등의 事業提携 및 共同行爲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業種別合理化計劃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經濟企劃院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第27條(資料提出) 商工部長官은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合理化事業者, 生產性本部 및 事業者團體에 대하여 그 業務에 관한 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第28條(權限의 委任·委託) 이 法에 의한 商工部長官의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工業振興廳長, 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委任하거나 生產性本部, 中小企業振興公團, 事業者團體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第7章 罰 則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86年7月1日부터 施行한다.

第3條(韓國生產性本部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의 財團法人 韓國生產性本部는 理事會의 決議에 의하여 그 모든 權利와 義務를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될 生產性本部가 承繼하도록 商工部長官에게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申請을 하여 商工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法人은 이 法에 의한 生產性本部의 設

立과 동시에 民法중 法人의 解散 및 淸算에 관한 規定에 불구하고 解散된 것으로 보며, 그 法人에 속하였던 모든 權利와 義務는 生産性本部가 承繼한다.

第4條(基金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機械工業振興法에 의하여 造成된 機械工業振興基金, 종전의 電子工業振興法에 의하여 造成된 電子工業振興基金은 이 法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基金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纖維工業近代化促進法에 의하여 造成된 纖維工業近代化基金중 商工部長官이 인정한 政府의 出捐金은 이 法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基金으로 보며, 그 殘額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韓國纖維産業聯合會가 이를 운용·管理한다.

③이 法 施行당시의 韓國造船工業協同組合 및 社團法人 韓國造船工業協會는 第25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造船共濟事業團體로 보며, 종전의 造船工業振興法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造成된 基金을 운용·管理한다.

第5條(事業者團體에 관한 經過措置) ①종전의 機械工業振興法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機械工業振興會, 종전의 電子工業振興法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電子工業振興會, 종전의 纖維工業近代化促進法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纖維産業聯合會는 각각 이 法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事業者團體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第23條第1項의 事業者團體와 유사한 目的으로 民法에 의하여 設立된 社團法人이 第23條第1項의 事業者團體가 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내에 그 組織을 變更하여 第23條第1項의 事業者團體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社團法人은 이 法에 맞추어 定款을 變更하고 商工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7條(다른 法律의 改正) 租稅減免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1號내지 第5號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나프타 分解工業
2. 銑鐵·特殊鋼 또는 轉爐에 의하여 鐵鋼을 製造하는 鐵鋼工業
3. 機械工業
4. 電子工業
5. 造船工業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기술용역대가의 기준

1975. 4.30 공고
1988 8. 6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기술용역육성법 제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자가 국내에서 수주하는 기술용역에 대한 기술용역대가(이하 "대가"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기술용역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용역업자가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용역을 수탁할 경우에는 이 대가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등의 차관에

의한 용역사업(직접 발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국내 용역업자가 수주할 경우에는 국제기준에 따라 대가를 산출할 수 있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사비 비율에 의한 방식'이라 함은 공사비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업무비용을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 '실비정액가산방식'이라 함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계액으로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3. '공사비'라 함은 발주자의 공사비 총 예정금액(자재대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한다.

제 4 조(대가산출의 기본원칙) ①대가의 산출은 본조 제2항 및 제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비 비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한다.

1. 건설부문기술용역
2. 통신부문기술용역

③제2항에 규정된 기술용역의 경우에도 '공사감리'는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대가를 산출할 수 있다.

제 5 조(대가의 조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

1. 계약체결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당초의 대가에 비하여 100분의 5이상이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2.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
3.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특히 정한 경우

제 6 조(대가의 준용) 기술용역육성법 시행령 별표1의 건설부문중 관개배수 및 농지조성분야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규칙에 의한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요율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장 공사비비율에 의한 방식

(생략)

제3장 실비정액가산방식

제 14 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라 함은 해당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자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기술자의 등급별 기술용역노임단위는 별표1과 같다.

제 15 조(직접경비) 직접경비라 함은 해당업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등의 사용료), 제출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타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수탁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그 실비를 계산한다.

제 16 조(제경비)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 서무, 경리직원등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수도비, 사무용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상각비, 통신운용비 , 회의비, 공과금, 영업활동비용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제 17 조(기술료) 기술료라 함은 용역업자가 개

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한다. 단, 산업설비용역업중 원자력산업부문 기술료는 1990년도말까지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40%로 한다.

제 18 조(실비정액가산방식의 특례)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대가산출이 불가능한 구매, 조달, 노하우의 전수 등의 기술용역업무에 대한 대가는 외국의 예를 참고로 하여 용역계약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 19 조(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 20 조(기술용역 노임단가의 적용기준) ①기술용역노임단가는 1일 8시간, 1개월을 25일로 계상한다. 다만,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와 월 2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기준법을 적용한다

②출장일수는 근로일에 가산하며, 이 경우 수탁자의 사무소를 출발한 날로부터 귀사한 날까지를 계상한다.

③기술용역수행기간중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훈련기간은 해당기술용역을 수행한 일수에 산입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표1> **기술용역 노임단가기준(1988. 8. 6 개정)**

구 분	산업설비 용역업		종합건설기술용역업
	원자력사업 부 문	산업공장 및 종합환경부문	전문기술용역업 개인기술용역업
특급기술자	77,200	72,900	72,500
고급기술자	58,700	56,100	55,400
중급기술자	43,500	40,800	40,400
초급기술자	28,600	27,200	27,000
고급기능사	33,700	32,000	31,700
중급기능사	18,500	17,700	17,400
초급기능사	13,200	12,700	12,600

<표2>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구분 기준	기술자격기준	학력·경험기준
특급기술자	기술사, 기사1급 12년이상	박사 3년이상, 석사 7년이상, 학사 12년이상, 전문대졸 14년이상
고급기술자	기사 1급 10년이상 12년미만, 기사2급 15년이상	3년미만, 석사 4년이상 7년미만, 학사 10년이상 12년미만, 전문대졸 12년이상 14년미만, 고졸 14년이상
중급기술자	기사1급 5년이상 10년미만, 기사2급 7년이상 15년미만	석사 4년미만, 학사 5년이상 10년미만, 전문대졸 7년이상 12년미만, 고졸 9년이상 14년미만
초급기술자	기사1급 5년미만, 기사2급 7년미만	학사 5년미만, 전문대졸 5년이상 7년미만, 고졸 7년이상 9년미만
고급기능사	기능장, 기능사 1급 5년이상, 기능사 2급 7년이상	전문대졸 5년이상 7년미만, 고졸 7년이상 9년미만

중급기능사	기능사 1급 5년미만, 기능사 2급 3년이상 7년미만	전문대졸 5년미만, 고졸 3년이상 7년미만
초급기능사	기능사 2급 3년미만	고졸 3년미만

註 : 1) 기술자라 함은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정의)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정의)에서 규정한 해당용역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로서 제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2)한국과학기술원 기술용역기술사과정 이수자는 중급기술자로 한다.

3)문교부장관이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학력·경험의 기준에 따른다.

4)학력·경험의 기준은 관련분야에 종사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산업기술정보원법

<1990 12 17 입법>

<1991 1 14 공포>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기술정보원(이하 "기정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국내외의 산업·무역 및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보급하고 산업간·지역간의 원활한 정보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데이타베이스"라 함은 국내외의 산업·무역 및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처리하여 컴퓨터등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축적 및 검색할 수 있도록 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제3조(법인격)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설립) ①기정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격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사무소등) ①기정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기정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외에 지원 및 부설기관을 둘수 있다.

제6조(정관) ①기정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지원 및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4. 사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기금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②기정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상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사업) ①기정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국내외의 산업·무역 및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이하 "정보"라 한다)의 수집·처리·관리 보급 및 데이타베이스 제작
2. 정보의 수집·처리·관리 및 보급에 관한 표준화연구 및 기술개발. 다만, 전기통신기본법 제20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 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과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전산망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이용기술의 개발과 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3. 국내외의 산업기술의 동향에 관한 조사·분석 및 연구
4. 전자계산조직을 활용한 정보처리 서비스의 제공
5. 산업기술정보망 및 지역정보보급체제의 구축
6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사업협력 및 정보유통
7. 정보의 이용촉진을 위한 계몽 및 인력양성
8. 국내 데이타베이스 목록의 작성
9. 정보수요의 조사 및 분석
10. 정부의 정보정책에 관한 자문 및 건의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기타 기정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기정원은 제1항제5호의 지역정보보급체제를 구축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등의 정보에 대한 수요를 감안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정보보급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기정원은 정보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제1항제8호의 국내데이타베이스 목록을 매년 1회 이상 발간하여야 한다.

제8조(임원) ①기정원에 이사장과 원장 각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이사장·이사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한다.

③감사는 기정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9조(이사회) ①기정원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장은 원장을 겸할 수 없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원장) ①기정원에 원장 1인을 둔다.

②원장은 기정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원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11조(직원의 임면) 기정원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장이 임면한다.

제12조(기금) ①기정원의 운영과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정원에 기금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달성한다.

③기금은 기정원이 운용·관리한다

④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출연금) ①정부는 기정원의 운영과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정원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의 교부·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국유재산의 무상임대) ①정부는 기정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정원에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 및 절차등은 당해 재산의 관리청과 기정원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15조(사업연도) 기정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기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 개시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기정원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결산서를 다음 연도 3월20일까지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자료의 요청) ①기정원은 제7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기정원이 아닌 자는 산업기술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9조(비밀엄수의 의무) 기정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20조(민법의 준용) 기정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벌칙)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과태료)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설립준비) ①상공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10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기정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②설립위원은 기정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상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 당시의 기정원의 원장은 상공부장관이 임명한다.

④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기정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속된 것으로 본다

⑥기정원이 설립될 때까지 기정원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산업연구원이 부담한다.

제3조(권리·의무의 승계) ①산업연구원법에 의한 산업연구원의 토지·건물·시설·설비등의 재산과 권리·의무중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재산과 권리·의무는 산업연구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정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기정원이 포괄승계한다. 이 경우 산업연구원의 재산은 기정원과 균등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정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격은 기정원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4조(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산업연구원 부설 산업기술정보센터의 직원은 이 법에 의한 기정원의 정원의 범위안에서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업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중 "국제경제 전반에 관한 각종 동향 및 정보의 수집·조사·연구"를 "국제경제 전반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수단의 발전"으로 하고 동조 제2호를 삭제한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

〔1973 12.31 법률 제2871호〕

개정 : 1981. 3.30. 법률 제3404호

제1조 (목 적) 이 법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정연구기관) 이 법에 의하여 정부의 보호 육성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과 재단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출연금 등) ①정부는 특정연구기관 또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이용시설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와 운영에 필요한 기금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연구기관 또는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관리기구(이하 '공동관리기구'라 한다)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교부·사용 및 그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①정부는 특

정연구기관 또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이용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정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여·대부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①특정연구기관과 공동관리기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계연도개시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처장관은 그 승인에 앞서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당해 출연사업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5조의 2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①특정연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의한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연구계획서의 수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연구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결산) ①특정연구기관의 공동관리기구는 매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과학기술처장관이 추천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과학기술처장관과 출연금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결산서의 기재사항중 국가비밀에 속하는 연구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 (비밀엄수의 의무) 특정연구기관과 공동관리기구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공동이용시설 등) ①특정연구기관은 합동하여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와 특정연구기관상호간의 기관사업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동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관리기구의 명칭·기능·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 2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처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연구하게 하거나 연구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8조의 3 (연구협약의 체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연구기관에 연구비를 출연할 때에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 특정연구기관과 연구방법·연구내용·연구비 지급기준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의 4 (업무협조 등) 특정연구기관과 공동관리기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조사연구개발이나 기술지원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벌칙)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조 (시행령) 이 법 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1974 6.13 대통령령 제7178호〕

개정 1989 7. 4 대통령령 제12748호

제1조 (목 적) 이 영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정연구기관의 설치지역)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설치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충청남도 대전시에 있는 대덕연구단지
2. 연구기관과 관련산업간에 유기적인 협조를 증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기지 개발구역
3. 기타 과학기술의 균형있는 진흥·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제3조 (연구기관의 지정)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 한국과학기술원
3. 한국에너지연구소
4. 한국동력자원연구소
5. 한국표준연구소
6 한국기계연구소
7. 한국전자통신연구소
8. 한국화학연구소
9. 한국인삼연초연구소
10 한국전기연구소
11. 한국과학재단

〔전문개정 81. 1 15 〕

제4조 (출연금의 지급) ①연구기관 또는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관리기구(이하 '공동관리기구'라 한다)에 대한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하되, 당해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관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회계예산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은 당해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한다〈개정 81. 1.15.〉.

②삭제〈81. 1.15.〉.

③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83. 3.25.〉.

④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가 출연금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81. 1. 5.〉.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제5조 (출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출연금을 그 지급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운영기금의 관리) ①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출연금중 운영에 필요한 기금(이하 '운영기금'이라 한다)은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가 운영기금의 원본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운영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국유재산의 잉여 등)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는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와의 양여계약이나 대부계약에 의한다.

②국유재산의 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준하여 국유재산의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대부의 대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다.

④국유재산의 관리청은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대부를 받은 국유재산을 그 대부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그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 (국유재산법의 준용) 국유재산의 양여와 무상대부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전 8월까지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과학기술처장관 및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계획서의 변경) ①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안을 변경할 때에는 이를 과학기술처장관 및 출연금을 지급하

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안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의 2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연구기관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연구보고서는 그 다음연도 3월31일까지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계획의 집행실적 보고 등) ①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기별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의 집행실적을 당해 분기가 종료된 날로부터 20일내에 과학기술처장관 및 출연금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31일까지 과학기술처장관 및 출연금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의 수지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2.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3.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제12조 (공동관리기구의 명칭) 공동관리기구의 명칭은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라 한다.

제13조 (공동관리기구의 기능) 공동관리기구는 다음 각호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1.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
2. 연구기관의 업무에 관한 협조
3. 연구기관직원의 복리증진과 후생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

제14조 (연구협약의 체결 등) ①법 제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연구협약은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기관과 체결한다.

②제1항의 연구협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의 과제·범위·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 연구비 및 그 지급의 시기·방법
3. 연구결과의 보고 및 활용
4. 연구성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
6. 협약위반에 관한 조치
7. 기타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③제1항의 경우에 연구기관은 당해 연구과제의 일부를 다른 연구기관 또는 기타의 자와 공동으로 연구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④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협약에 의한 연구비를 수회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나 그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연구비 등의 사용) ①연구기관은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연구비를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다음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종사자의 인건비
2. 국외전문가의 초청 및 연구원의 교육훈련

에 따른 경비

3. 연구시설(연구기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임차·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4. 재료구입비
5. 기술도입비 및 기술정보활동비
6. 해외연구소설치 및 운영비
7. 개발보건비
8. 과제개발·기술지도, 기타 연구수행에 수반되는 경비

②연구기관은 연구성과를 산업계·학계 및 다른 연구기관, 기타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단체 등에 전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이용으로 새로운 제품의 생산, 원가의 절감, 품질의 향상 등의 효과를 얻은 때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제1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연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기관의 연구수행을 위한 비용
2. 연구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비용
3. 연구원(기술료를 징수한 연구과제를 연구한 자에 한한다)의 연구능률 향상을 위한 비용

제16조 (준용규정) 제4조 제3항 내지 제5항, 제6조, 제9조 내지 제11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가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장으로부터 관계법령에 의하여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특정연구기관관리위원회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28인'을 '27인'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상공부차관' 다음에 '동력자원부 차관'을, '체신부차관' 다음에 '전매청장'을 각각 삽입하며, 제7조제2항중 '24인'을 '28인'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상공부기획관리실장' 다음에 '동력자원부기획관리실장'을, '과학기술처 과학기술심의 실장'다음에 '전매청차장'을 각각 삽입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전산망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1989 4 25 체신부령 제812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 적) 이 규칙은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망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망 기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산망의 내부 및 전산망간의 상호접속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용전산망'이라 함은 전산망서비스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전산망을 말한다.

2. '자가전산망'이라 함은 전산망을 설치하여 그 설치한 자만의 독점적 이용을 위하여 구성하는 전산망을 말한다.
3. '상호접속'이라 함은 전산망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전산망기기 상호간 호환과 연동을 가능하게 하는 접속을 말한다.
4. '통신구조'라 함은 정보의 처리·전송에 필요한 전산망기기 상호간의 통신을 확보할 수 있는 논리적 계층구조의 집합체를 말한다.
5. '통신규약'이라 함은 전산망의 내부 또는 전산망간의 상호접속에 제공되는 전산망기기간 통신신호의 순서 및 절차등에 관한 약속을 말한다.
6. '기능표준'이라 함은 통일된 전산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산망기기에 필요한 계층의 기능별 통신규약을 조합한 논리적 집합체를 말한다.
7. '전산망서비스'라 함은 전산망을 통한 정보의 저장·변환·축적·가공·검색 또는 전달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8. '번호계획'이라 함은 미래의 가입자 및 전산망간 통신방식등을 고려하여 가입자의 확인 및 호출등이 원활하도록 전산망 가입자등에게 유일한 번호를 부여하기 위한 통일적인 계획을 말한다.
9. '분계점'이라 함은 전산망기기 상호간을 연결할 때 건설·운영 및 유지·보수의 책임한계를 구분하기 위한 접속점을 말한다.
10. '불요전자파'라 함은 10킬로헤르츠 내지 3기가헤르츠의 무선주파수 대역내에서 발생되는 전자기적 에너지로서 통신의 기능에 장애를 줄수 있는 전자파를 말한다.

제4조 (기능표준 등의 고시) ①체신부장관은 전산망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과 기술발전에 따른 국제표준화 추세 및 기술의 이용실태를 고려하여 전산망의 상호접속에 필요한 기능표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체신부장관은 국가기간전산망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호환성과 연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신에 이용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관리·유지·보수의 단계 및 방법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표준을 정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의 개발·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 (시험·검사) ①체신부장관은 전산망의 내부 또는 전산망간의 상호접속 및 전산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산망기기가 기능표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적합성 및 상호운용에 관한 시험을 받게 할 수 있다.

②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시험을 행할 수 있는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춘 기관을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체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시험·검사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산망기기로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표준을 적용하는 전산망기기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를 면제한다.

1.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기기
2. 전기통신기본법 제28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이 행한 시험·검사에 합격하거나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통신기자재
3. 전파관리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검정에 합격한 전기통신기자재
4. 공업표준화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공업규격표시를 획득한 전산망기기

제7조 (분계점의 설정) ①전산망기기가 타인의 전산망기기와 접속되는 경우에는 그 설치와 보전에 관한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분계점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분계점은 국가기간전산망 또는 사업용전산망을 구축·운용하는 자(이하 '전산망보유자 등'이라 한다)가 설정한다. 이 경우 전산망간을 상호접속할 때에는 접속을 허용하는 자가 설정한다.

③분계점에 사용되는 기기 또는 장치는 접속되는 설비의 성능을 시험·검사하기 위하여 기능적으로 분리 또는 시험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제8조 (접속기준의 신고) 전산망보유자 등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계점
2. 분계점에서의 접속기준
3. 전산망의 장애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제9조 (불요전자파의 제한) 전산망의 구성에 필요한 전자계산조직 등의 불요전자파의 한계는 별표 1과 같다.

제2장 전산망의 구성

제10조 (통신구조) ①전산망의 내부 또는 전산망간의 상호접속을 위한 국가기간전산망 또는 사업용전산망의 통신구조는 공업표준화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이 공고한 한국공업규격에 규정된 개방형시스템간 상호접속의 기본참조모델에 따라야 한다. 다만, 체신부장관은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통신사업자(이하 '공중통신사업자'라 한다)가 구축·운용하는 전산망 외의 사업용전산망 내부의 상호접속을 위한 통신구조에 대하여는 상호접속의 기본참조모델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구조의 계층은 기능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하위계층

   전송매체의 제어기능과 통신망내의 전송경로 제어기능 등을 제공하는 계층
2. 상위계층

   하위계층에서 설정된 전송경로상에서 전자계산조직간의 정보전달 및 대화설정과 전송하는 정보의 형태 및 정보처리기능 등을 제공하는 계층

제11조 (통신규약) ①전산망의 내부 또는 전산

망간의 상호접속을 위한 국가기간전산망 및 사업용전산망의 통신규약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능 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체신부장관은 공중통신사업자가 구축·운용하는 전산망외의 사업용전산망 내부의 상호접속을 위한 통신규약에 대하여는 기능표준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규약서는 전산망서비스 제공에 장애 또는 이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 (번호계획) ①체신부장관은 전산망의 확장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번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번호계획의 수립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③체신부장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가 번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전산망보유자 등은 당해 전산망의 이용자에게 전산망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번호계획에 따라야 한다.

제3장 전산망의 기능보호

제13조 (전산실 및 통신센터의 환경조건) 전산망을 구성하고 있는 전자계산조직과 이에 부수되는 입력·출력장치 및 통신설비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전산실 및 통신센터의 환경조건은 별표 2와 같다.

제14조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대책) ①전산망보유자 등은 전산망의 기능유지와 정보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서로 다른 지점에 설치된 중요한 통신센터 및 전산실간을 연결하는 전송로의 다른 설비의 전송로에의 분산
2. 중요한 설비의 이중화와 동작상황의 감시 및 고장발생시 그 내역의 신속한 통보
3. 전산망서비스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주요 고장 발생시의 긴급 복구
4. 정당한 이용자의 식별·확인가능 및 정보의 유실방지
5. 타인의 오염된 데이타 또는 소프트웨어의 조작 등으로부터 전산망내 소프트웨어 및 데이타의 손괴방지와 다른 전자계산조직으로의 확산방지
6. 기타 체신부장관이 전산망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정하는 사항

②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대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지침이 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전산망 규모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5조 (손상 및 기능장애 방지) ①전산망보유자 등은 이용자의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의 전산망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그의 전자계산조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전산망보유자 등은 다른 전산망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전산망기기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전압·전류 및 전기신호를 송출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불요전자파의 한계(제 9 조 관련)

1. 전자계산조직의 분류

가 등급A : 사업용 또는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전자계산조직(개인용컴퓨터를 제외한다)

2 한계 값

나. 등급B : 등급A외의 전자계산조직

불요복사한계		
주 파 수 (MHz)	등 급 A (30m에서 측정)	등 급 B (3m에서 측정)
30이상~88미만	30μV/M	100μV/M
88이상~216미만	50μV/M	150μV/M
216이상~1,000미만	70μV/M	200μV/M
도전잡음한계		
주 파 수 (MHz)	등 급 A	등 급 B
0 45이상 21 6미만	1,000μV	250μV
1 6이상 230미만	3,000μV	250μV

〔별표 2〕 전산실 및 통신센터의 환경조건(제13조 관련)

보호시설	접지시설	온 습 도		자동조절장치
		온 도	습 도	분진제거장치
허용한계	단 독	16℃이상	40%이상	50g/m이하
	15 이 하	28℃이하	70%이하	

제 4 장 보 칙

제16조 (자가전산망의 접속) ①제15조 제2항의 규정은 자가전산망을 다른 전산망에 접속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체신부장관은 자가전산망보유자가 전산망기기를 상호접속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표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7조 (특수전산망의 설치) 타인의 전산망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전산망으로서 통신보안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에 의하여 고시되는 기술기준과 다른 전산망을 구축·운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체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 (개발방법의 권고) 체신부장관은 전산망의 호환성 및 연동성을 확보하고 전산망의 유지·보수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는 전자계산조직의 이용기술의 개발에 관한 방법을 정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 (새로운 전산망기술의 사용)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에 의하여 고시된 기술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새로운 전산망기술을 개발하여 이의 시험적 운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용기간·사용범위 등에 관하여 미리 체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구축중이거나 구축된 전산망은 이 규칙에 의하여 적합하게 구축된 것으로 본다.

●전자파장해검정규칙

1990 9 3. 체신부령 제825호 공포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전파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9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장해기기의 전자파장해방지기준 및 전자파장해로 부터의 보호기준과 법 제29조 5

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장해검정(이하 '장해검정'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파장해'라 함은 전자파방사 또는 전자파전도에 의하여 다른 기기의 성능에 장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2. '전자파내성'이라 함은 방사내성 및 전도내성을 말한다.
3. '전자파방사'라 함은 전자파 에너지가 공간으로 퍼지는 것을 말한다.
4. '전자파전도'라 함은 전자파 에너지가 전원선을 통하여 흐르는 것을 말한다.
5. '방사내성'이라 함은 전자파방사로부터 기기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5. '전도내성'이라 함은 전자파전도로부터 기기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제2장 전자파장해방지 등의 기준

제3조 (전자파장해방지기준) ①전자파장해방지기준은 전자파방사기준 및 전자파전도로 분류한다.

②전자파방사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전자파전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전자파장해로부터 보호기준) 전자파장해로부터 보호기준은 방사내성 기준 및 전도내성기준으로 분류하되 세부기준은 체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3장 장해검정

제5조 (장해검정 대상기기) 장해검정의 대상기기(이하 '대상기기'라 한다)는 다음 각호중 체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기로 한다.

1. 전기·전자기기
2. 산업, 과학, 의료용 고주파이용설비(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고주파 이용설비를 제외한다)
3. 유선통신 단말기기
4. 9킬로헤르츠이상의 타이밍신호 또는 펄스를 이용하는 컴퓨터, 전자기기 및 주변장치(이하 '정보기기'라 한다)

제6조 (검정신청) ①장해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검정을 받고자 하는 기기(이하 '수검기기'라 한다)와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해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파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기설명서 1부
2. 지정시험관의 시험성적서 1부(시험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3 외국 검정기관의 장해검정 합격증 사본 및 시험성적서 각 1부(외국의 검정기관에서 검정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수검기기의 제출을 생략한다.

제7조 (신청인의 참석) 소장은 장해검정을 함에 있어서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장해검정의 방법 등) ①소장은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서류의 심사 및 검정 또는 시험을 행하여야 한다.

1. 제출서류 등의 적정여부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장해방지기준에의 적합여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검기기의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
2. 외국의 검정기관에서 검정 또는 시험을 받고 당해 기관에서 발행한 검정 합격증 사본 또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검정의 세부방법 등은 체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 (처리기한)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해검정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장해검정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시험기관이 행하는 시험을 받은 기기에 대한 장해검정은 5일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제10조 (합격결정 등) ①소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검정 결과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장해방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합격결정을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검정합격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한다.

1. 제작자의 성명 또는 상호
2. 기기의 명칭
3. 장해검정번호
4. 장해검정 합격연월일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소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검정결과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장해방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이를 불합격으로 하고, 그 뜻을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검정관리) ①제작자 또는 수입자는 장해검정을 받은 기기의 설계, 구조 또는 형식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장해검정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다만, 전자파전도 및 전자파 방사의 기준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6조의 규정은 제1항 본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2조 (합격표장)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검정에 합격한 기기 (이하 '합격기기'라 한다)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별표 3의 합격표장을 합격기기마다 부착하여야 한다.

제4장 지정시험기관

제13조 (시험기관의 지정) 체신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기기의 장해검정에 필요한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 (시험기관의 지정신청)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시험기관지정신청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시험수수료의 기준 및 산출근거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원증명서
4. 제15조 각호의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시험기관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인이 지정시험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당해 신청인을 지정 시험기관으로 지정·고시하고, 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시험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지정의 요건) 지정시험기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야외시험장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대용시험실을 보유할 것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자분야 또는 통신분야의 기사 1급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전자·통신분야의 학사이상의 학위가 있는 자로서 당해분야의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 5명이상을 확보할 것
3. 체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측정기기를 보유할 것
4. 기타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실 등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사항에 적합할 것

제16조 (야외시험장) 야외시험장의 설치기준 및 조건은 별표 4와 같다.

제17조 (대용시험실) 대용시험실의 설치기준 및 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용시험실에서의 시험결과는 야외시험장의 시험결과와 상관관계가 있을 것
2. 기타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건에 적합할 것

제18조 (시험의 신청) 지정시험기관으로부터 장해검정에 필요한 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험에 필요한 기기및 서류를 지정시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시험성적서) 지정시험기관이 대상기기에 대하여 시험을 마친때에는 신청인에게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 (지정의 취소 등) 체신부장관은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험업무를 부정확하게 한 때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시험의 신청을 거부한 때

제21조 (지정시험기관의 자료제출) 지정시험기관은 시험업무 등에 관하여 체신부장관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장 장해검정합격의 취소 및 청문

제22조 (합격취소) ①소장은 합격기기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해검정에 합격한 때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장해방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때

②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기기의 제작자 또는 수입자에게 그 뜻을 문서로 통지하고 이

를 관보에 고시한다.

제23조 (청문) 소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검정의 합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기기의 제작자 또는 수입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작자 또는 수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 (합격증의 반납)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취소의 통지를 받거나 합격기기의 제작 또는 수입을 중지한 자는 당해 합격기기에 관한 검정합격증을 소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 6 장 성능유지업무

제25조 (성능유지업무) 국내의 합격기기 제작자 또는 수입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매년 1회 이상 합격기기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성능의 측정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 성능유지업무를 하거나 지정시험기관에 의뢰하여 합격기기의 성능유지업무를 하게 하여야 하고, 그 측정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 (성능유지업무 자료보관) ①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유지업무를 수행한 자는 그 결과를 당해 기기의 생산 또는 수입이 중지한 후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제작자 등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유지업무 수행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 (조사·확인 등) ①소장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성능유지 업무가 적정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소장은 추가로 제작 또는 수입한 합격기기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장해방지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시험하기 위하여 제작자 등에게 당해 기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인 또는 시험결과 합격기기가 제3조 규정에 의한 전자파장해방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때에는 제작자 등에게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28조 (증표의 제시)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확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 7장 보 칙

제29조 (수수료) ①장해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장해검정수수료를 소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③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검정의 시험을 생략하는 수검기기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5분의 1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0조 (사용자 안내문) 정보기기 및 유선통신단말기기의 제작자 또는 수입자는 별표 6의 사용자 안내문을 합격기기의 취급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1990. 9. 3. 체신부령제82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전기통신설비

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시험검사기관에 의한 성능 및 품질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기기는 이 규칙에 의한 장해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전자파 방사기준(제3조 제2항 관련)

기기의 종류	측정거리 (m)	주파수(MHz)	최대허용전계강도 (uv/m)
1 전기·전자기기			
가 전열기구류, 전자 응용기계기구류 등	10	0.15이상 200이하	100
나 텔레비전수상기, FM라디오수신기 등	3	65이상 130이하	500
		130초과 150이하	50×(주파수단위 MHz)−6,000
		150초과 280이하	1,500
		280초과 470이하	(600/19)×(주파수단위 MHz)−139,500/19
		470초과1,000이하	7,500
다 전자오락기구	3	54이상 216이하	15
		470이상 890이하	60
라 전자레인지	30	90이상 108이하	30
		170이상 222이하	30
		470이상 770이하	30
		상기이외주파수	100
		(1)500W미만	100
		(2) 500W이상	√20×(고주파출력)
2. 산업·과학 및 의료용고주파이용설비			
가 의료용설비	30	0.15이상1,000이하	100
나 산업용 가열설비	100	〃	100
다 각종설비			
(1) 500와트이하	30	〃	100
(2) 500와트초과	100	〃	100
3. 유선통신단말기기			
가 A급기기	10	30이상 88이하	90
		88초과 216이하	150
		216초과 960이하	210
		960초과	300
나 B급기기	3	30이상 88이하	100
		88초과 216이하	150
		216초과 960이하	200
		960초과	500
4. 정보기기			
가 A급기기	10	30이상 88이하	90
		88초과 216이하	150
		216초과 960이하	210
		960초과	300
나 B급기기	3	30이상 88이하	100
		88초과 216이하	150
		216초과 960이하	200
		960초과	500

〔별표 2〕 전자파 전도기준(제3조 제3항 관련)

기기의 종류	주파수(MHz)	최대허용단자전압 (uv)
1 전기·전자기기		
가 전열기구류, 전자응용기계기구류 등	0.525이상 1,605이하	1,778
나 텔레비전수상기, 텔레비전수상기용 부스타등	0.525이상 25이하	100
다 전자오락기구	0.525이상 25이하	100
라 FM라디오 수신기등	0.525이상 9이하	20×(주파수 단위·MHz)−140
	9초과 10이하	100
	10이상 25이하	1,000
2. 유선통신단말기기		
가 A급	0.45이상 1.705이하	1,000
	1,705초과 30이하	3,000
나 B급	0.45이상 30이하	250
3. 정보기기		
가 A급	0.45이상 1.705이하	1,000
	1.705초과 30이하	3,000
나 B급	0.45이상 30이하	250

*비고

A급 업무용 기기를 말한다

B급 : 업무용 기기 외의 기기를 말한다

〔별표 3〕 합격포장 (제12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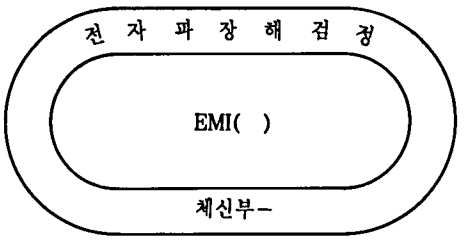

1. 형태 : 타원형
2. 글씨체 : 고딕체
3. 규격
   가. EMI글씨의 길이 : 10㎜
   나. 기타 글씨의 길이 : 5㎜
   다. 외부원 반지름 : 20㎜
   라. 내부원 반지름 : 10㎜
   마. 두 원의 중심간의 거리 : 30㎜
4. 정보기기 및 유선통신단말기기의 경우에는 괄호안에 기기의 구분(A 또는 B)을 표시한다.
5. 색채는 흰색바탕에 검은글씨로 한다. 다만, 기기의 겉면에 양각 색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합격표장은 기기의 크기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 부착할 수 있다.

〔별표 4〕 야외시험장의 설치기준 및 조건(제18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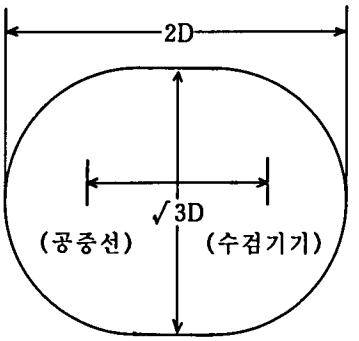

D=측정거리(공중선과 수검기기의 간격을 말한다)

*비고

1. 전자파방해가 없는 개방되고 평탄한 지역일 것
2. 지하 전선로 등 측정에 영향을 주는 시설이 없을 것
3. 기타 시험장의 전자파감쇄특성 및 전자파잡음 등은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건에 적합할 것

〔별표 5〕 장해검정수수료(제29조제2항관련)

종 별	수 수 료
전기·전자기기	236,000
산업·과학·의료용 고주파이용 설비	268,000
유선통신단말기기	318,000
정보기기	318,000

〔별표 6〕 사용자 안내문(제30조 관련)

기종별	사 용 자 안 내 문
A급기기	이 기기는 업무용으로 전자파장해검정을 받은 기기이오니 판매자 또는 사용자는 이 점을 주의하시기 바라며, 만약 잘못 구입하였을 때에는 구입한 곳에서 비업무용으로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B급기기	이 기기는 비업무용으로 전자파장해검정을 받은 기기로서 주거지역에서는 물론 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품질보증기준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7조에 의거, 91년 4월 1일과기처공고〕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7조 및 동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프로그램의 품질보증 기준을 정하고 이의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신뢰성과 품질을 확보하고자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프로그램개발의뢰자(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프로그램개발자(이하 "개발자"라 한다)에게 의뢰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보수등(이하 "프로그램개발"이라 한다) 프로그램의 개발공정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프로그램'이라 함은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2조1항에 의거,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②'프로그램품질'이라 함은 프로그램품질의 기능, 성능 및 품질에 관련된 제반사항에 있어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구조건이 부합하는 정도를 말한다.

③'프로그램품질목표'라 함은 프로그램품질이 달성코자 하는 설정치를 말한다.

④'프로그램품질보증'이라 함은 프로그램에 요구되는 품질목표를 개발자가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품질보증요소) ①프로그램품질 보증요소는 품질보증조직, 품질보증계획, 개발공정별 품질평가, 시정조치, 외주관리, 문서관리, 품질기록등으로 이루어진다.

②품질보증활동은 제1항에서 규정한 품질보증요소를 활용하여 전개하되 당해 프로그램의 규모, 특성 및 중요도 등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제5조(품질보증조직) ①개발자는 프로그램 품질보증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품질보증 활동을 전담하는 조직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②품질보증조직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가. 품질평가

나. 품질문제의 제기

다. 품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라. 해결방안의 이행여부 확인

제6조(품질보증계획) ①발주자는 프로그램의 품질 및 품질목표를 명확히 규정하여 이를 문서로써 개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개발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품질 및 품질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한다.

가. 품질보증계획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의 요구조건

나. 발주자가 요구하는 품질목표

다. 프로그램 개발공정별 품질보증활동 방안

라. 외부프로그램 사용 내역

마. 개발조직의 구성

바. 문서의 종류 및 표준화

③발주자는 개발자가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승인여부를 통보한다.

제 7 조(개발공정별 품질평가) ①본 기준의 적용을 받는 개발공정은 요구분석, 설계, 프로그램작성, 통합 테스트 및 설치, 유지보수로 구분한다.

②프로그램 개발공정별 제10조에 해당하는 산출물이 작성되면 품질보증조직은 품질평가를 실시한다.

③품질보증조직은 품질평가결과 품질목표에 미달되는 경우 이를 시정조치토록 한다.

제 8 조(시정조치) 개발자는 시정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수립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 9 조(외주관리) 개발자가 당해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외주에 의해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품질보증을 위하여 제6조2항에서 정의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0조(문서관리) ①문서관리 대상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요구분석서 및 시스템시험계획서

나. 설계서 및 통합시험계획서

다. 프로그램명세서

라. 통합시험 및 시스템시험보고서

마. 사용자지침서 및 운용지침서

바. 유지보수계획서

②문서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품질보증조직의 확인하에 조치토록 한다.

제11조(품질기록) 개발자는 품질보증 활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으로 보존한다.

제12조(품질확인) ①발주자는 개발자가 수행한 제7조의 개발공정별 품질평가와 시정조치 및 품질기록을 제출받아 품질목표의 달성여부를 확인 검토한 후 승인한다.

②발주자는 최종 프로그램의 검수조건을 규정하여 이를 문서로써 개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개발자는 검수시 이의 달성여부를 입증하여야 한다

제13조(발주자의 품질보증 관련조직) 발주자는 제6조의1항, 3항 및 제12조의1항 및 2항에 규정한 발주자측의 품질보증관련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부 칙

①이 기준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법은 무역업무의 자동화(이하 "무역자동화"라 한다)를 촉진하여 무역절차의 간소화와 무역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실현하고 무역업무의 처리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역자동화"라 함은 무역업자와 무역유관기관이 대외무역법령 및 대외무역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와 관련되는 법령·수출보험법령·외국환관리법령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 및 당사자간 계약(이하 "무역관련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무역업무를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무역업자"라 함은 무역유관기관에게 무역

관련법령등이 정하는 신청·신고·보고등(이하 "신청등"이라 한다)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무역유관기관"이라 함은 무역업자에게 무역관련법령등이 정하는 승인·면허·인증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무역자동화사업"이라 함은 무역업자와 무역유관기관등을 연결한 통신망(이하 "무역자동화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무역업자와 무역유관기관에게 무역자동화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5. "무역자동화사업자"라 함은 무역자동화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말하며, "지정사업자"라 함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6. "전자문서교환방식"이라 함은 무역업무를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간에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전송·처리 또는 보관(이하 "전송등"이라 한다)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간에 전송등이 되거나 출력된 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자료를 말한다.
8. "전자서명"이라 함은 명의인을 전자문서의 표시한 문자와 작성자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기호 또는 부호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무역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무역업무중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역업무의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2장 무역자동화사업자

제4조(사업자 자격)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어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지정등) ①사업자중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무에 관한 무역자동화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경쟁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상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무에 관한 무역자동화사업
2. 전자문서 또는 무역화물유통정보등 무역관련정보(이하 "무역정보"라 한다)의 전송등의 사업
3 전자문서 및 무역정보를 체계적으로 처리·보관하여 검색등에 활용할 수 있는 집합체(이하 "데이타베이스"라 한다)의 제작 및 보급사업
4. 무역업자 및 무역유관기관에 대한 전자문서교환방식과 관련한 기술의 보급 및 보급한 기술에 대한 사후관리사업
5. 무역자동화망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역업자를 위하여 무역자동화망을 이용하여 무역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하는 사업(이하 "대행처리사업"이라 한다)및 대행처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사업자를 제외한다)에 대

한 관리

6. 기타 무역자동화를 위한 교육·홍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6조(지정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지정사업자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은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다만, 법인의 임원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지정의 취소등) ①지정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5조제2항 각호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1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때

2.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상공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장 무역자동화망의 구성 및 이용

제8조(사업계획의 승인등)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무역자동화망의 구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다.

②상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사업계획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무역유관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약정체결등) 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지정사업자는 무역자동화망에 가입하고자 하는 무역업자·무역유관기관·사업자 및 제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처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대행처리사업자"라 한다)와 무역자동화망에의 가입 및 이용등에 관하여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지정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정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정한 내용을 지체없이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약정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무역자동화망의 이용등) ①무역업자와 무역유관기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무를 무역자동화망을 이용하여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화된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무역업자와 무역유관기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역업무를 무역자동화망을 이용하여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사업자를 통하여야 한다.

제4장 전자문서의 표준화 및 효력

제11조(전자문서의 표준화계획) ①상공부장관은 무역자동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업무에 관한 전자문서의 표준화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표준화계획에 포함될 표준화내용·대상등 주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신청등 또는 승인등의 효력) 무역업자 또는 무역유관기관이 무역자동화망을 이용하여 신청등 또는 승인등을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무역관련법령등에서 정한 각종 절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전자문서의 형식의 효력) 무역업자 또는 무역유관기관이 무역자동화망을 이용하여 신청등 또는 승인등을 한 전자문서는 무역관련법령등이 정한 문서로 본다.

제14조(전자서명의 효력등) ①무역업자 또는 무역유관기관이 무역자동화망을 이용하여 신청등 또는 승인등을 한 전자문서상의 전자서명은 무역관련법령등이 정한 문서상의 서명날인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상에 전자서명을 한 명의인은 무역관련법령등이 정한 문서상에 서명날인하도록 규정된 자로 본다.

제15조(전자문서의 도달시기) ①무역업자 또는 무역유관기관이 무역자동화망을 이용하여 신청등 또는 승인등을 한 전자문서는 사업자 또는 지정사업자의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후, 상대방의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때에는 그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등과 승인등은 사업자 또는 지정사업자의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후 통상 전송에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된때에는 상대방의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한다.

③전자문서의 도달시기에 관하여 다른 법률이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정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동 법률이나 약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16조(전자문서의 내용의 효력) 무역업자 또는 무역유관기관이 무역자동화망을 이용하여 신청등 또는 승인등을 한 당해 전자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 또는 지정사업자의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전자문서의 내용대로 작성되어진 것으로 추정한다.

제17조(신청등 관련제출서류에 관한 특례) 상공부장관이 무역관련법령등에서 정한 신청등을 위한 서류중 전자문서로 전송등을 하는 것이 기술상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관련법령등에서 정한 신청등의 서류중 일부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상공부장관이 고시하는 문서 또는 전자문서외의 방식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전자문서 및 무역정보의 보안관리

제18조(전자문서 및 무역정보에 관한 보안) ① 누구든지 지정사업자·무역업자·무역유관기관 및 대행처리사업자의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전자문서 또는 데이타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지정사업자·무역업자·무역유관기관 및 대행처리사업자의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전자문서 또는 데이타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를 훼손하거나 그의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지정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지득한 전자문서상의 비밀과 무역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지정사업자는 전자문서 및 데이타베이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⑤지정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 및 무역정보에 관한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전자문서 및 무역정보의 공개) ①지정사업자는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전자문서 및 데이타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지정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 및 무역정보를 공개하고자 할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승인을 하고자 할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된 전자문서 및 무역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사업자에게 그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0조(청문) 상공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지정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지정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전기통신사업법과의 관계)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 상공부장관은 이 법에 의

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보고·검사) ①상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사업자의 사무소·영업소등에서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4조(지도·감독) 상공부장관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사업자의 사업에 대하여 지정사업자를 지도·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7장 벌 칙

제25조(벌칙) ①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정사업자·무역업자·무역유관기관 및 대행처리사업자의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전자문서 또는 데이타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행사하는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공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무에 관한 무역자동화사업을 행한 자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정사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무역업무를 무역자동화망을 이용하여 행한 자
3.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정사업자·무역업자·무역유관기관 및 대행처리사업자의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전자문서 또는 데이타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를 훼손하거나 그의 비밀을 침해한 자
4.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상 지득한 전자문서상의 비밀과 무역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지정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5.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자문서 또는 데이타베이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지정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 또는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8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정사업자는 1억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보호조치를 시행한 지정사업자
2.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자문서 및 무역정보를 공개한 지정사업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정사업자는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지정사업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지정사업자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지정사업자

③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상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상공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지정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